

『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17년 8월 구미낙동강 승마길 개장에 따라 낙동강 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며, 승마길 및 하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위치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개방시간,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, 입장제한(안 제4조~제6조)
- 오물 발생 최소한의 노력, 오물 처리 방법 및 재활용
(안 제7조~제8조)
- 오물 수거 수수료 부과·징수, 오물 수거 수수료 감면, 오물 수거 수수료 반환, 세입조치 등(안 제9조~제12조)
- 사용절차와 방법, 사용자의 준수사항(안 제13조~제14조)

- 예산지원 등(안 제15조)
- 원상복구, 질서유지 감독(안 제16조~제17조)
- 위탁 관리·운영(안 제18조)
- 준용, 시행규칙(안 제19조~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하천법」,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
「말산업 육성법」, 「민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건설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 - 2017년 8월경 개장하는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용절차와 방법, 사용자 준수사항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